

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(2020. 12. 17.)에서
의결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
공포한다.

2020년 12월 18일

고흥군의회 의장 송 영



규칙 제2020-32호

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(허가권자)”를 “(공무국외출장의 허가)”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,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
2.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
3.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

제4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6조제4항 중 “의정담당”을 “의정팀장”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허가권자)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국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은 국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공무국외출장의 허가)</p> <p>①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국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은 국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,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 2.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3.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
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 <p><신 설></p>	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⑤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회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.</p>	<p>⑥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회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.</p>